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023. 6. 19.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37호로 2023년 5월 4일 우경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수여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 규정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8조)
- 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범위 정비 및 공적심사 자료의 공적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근거 신설(안 제11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생략.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수여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 심사 규정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을 별지 서식에 따르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되, 표창의 종류<sup>1)</sup>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범위를 한정함.
- 안 제11조(공적심사)는 표창권자가 표창 대상을 결정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되,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적사실의 확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현 조례 제11조(공적심사)의 단서 규정인 “위원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안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항으로 이동시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제3조: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 표창 수여와 관련하여 현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표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3. 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3. 8. 13., 2017. 3. 9.>

### 4. 직무상의 행위

-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과약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

회원·구두미회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 11. 14., 2010. 1. 25.>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 25.>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